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미디어산업실 내 하부 조직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문화산업정책관·콘텐츠미디어산업관”을 각각 “콘텐츠산업정책관·문화미디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산업정책관”을 “콘텐츠산업정책관”으로, “제1호부터 제15호”를 “제1호부터 제3호, 제11호부터 제12호, 제16호부터 제19호, 제23호부터 제24호, 제26호부터 제30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을 “문화미디어정책관”으로 “제16호부터 제30호”를 “제4호부터 제10호, 제13호부터 제15호, 제16호부터 제17호(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0호부터 제22호, 제25호, 제30호(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산업정책과·문화기술과·문화산업기반과·문화수출통상과·미디어정책과·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출판인쇄독서진흥과·대중문화산업과”를 “콘텐츠산업정책과·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출판인쇄독서진흥과·대중문화산업과·문화산업정책과·미디어정책과·문화기술과·문화수출통상과”로, “문화산업정책과장”을 “콘텐츠산업정책과장”으로, “문화산업기반

과장”을 “문화산업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콘텐츠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고·방송영상·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출판·인쇄·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콘텐츠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산업의 세제 지원 등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7. 문화콘텐츠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10.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11.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
12.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와 사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
 조성에 관한 사항
13.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진흥과 육성, 사업화 촉진,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4.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
 15. 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16. 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17.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18. 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9. 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0. 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21.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22.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23.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⑨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비디오물·방송영상·애니메이션 산업(이하 이 항에서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이라 한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작·제작·배급·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3.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유통구조 개선·정보화·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영상방송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5.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8. 영상방송콘텐츠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9.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입체 · 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2. 영화 · 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3.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4. 비디오물 · 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5.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6.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⑩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 ·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모바일·스마트 문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⑪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3. 출판·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지원
11. 출판업·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지원
14.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독서관련 법인·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6.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연구
17.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 ⑫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이 항에서 “대중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산업의 창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대중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대중문화산업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
한 사항
 10. 대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대중문화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 ⑬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미디어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3. 문화미디어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
 4. 문화미디어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6.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8.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의 지정·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금융제도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 콘텐츠 선순환 기업육성 생태계 구축 관련 사항

12.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⑭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뉴미디어 · 지역언론 · 정기간행물발행업 · 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화미디어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 정기간행물사업 · 지역언론 · 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 정기간행물사업 ·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 신고에 관한 사항
6. 외국신문 ·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사 지사 · 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뉴스통신진흥회 · 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⑮ 문화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 ·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 운영
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 콘텐츠의 융 · 복합 콘텐츠 육성 관련 사항

5.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⑯ 문화수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4.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7.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현지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해외에서의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한 사항
10.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

항제1호”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1호”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0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① (생 략)	제8조의2(문화미디어산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미디어산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u>문화산업정책관</u> <u>· 콘텐츠미디어산업관 · 저작권</u> <u>정책관 및 국제문화정책관</u> 으로 하며, <u>문화산업정책관 · 콘텐츠미</u> <u>디어산업관 · 저작권정책관 및 국</u> <u>제문화정책관</u>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 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 으로 한다.	② ----- ----- ----- ----- <u>콘텐츠산업정책관 ·</u> <u>문화미디어정책관</u> ----- ----- <u>콘텐</u> <u>츠산업정책관 · 문화미디어정책</u> <u>관</u> ----- ----- ----- -----.
③ <u>문화산업정책관</u> 은 「문화체 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5 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 좌한다.	③ <u>콘텐츠산업정책관</u> 은----- -----제1 1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3호, 제 11호부터 제12호, 제16호부터 제1 9호, 제23호부터 제24호, 제26호 부터 제30호 ----- ----- -----.
④ <u>콘텐츠미디어산업관</u> 은 「문 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	④ <u>문화미디어정책관</u> 은----- -----제1

제」 제11조의2제3항제1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⑥ (생략)	1조의2제3항제4호부터 제10호, 제13호부터 제15호, 제16호부터 제17호(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0호부터 제22호, 제25호, 제30호(정기간행물발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u>문화미디어산업실에 문화산업정책과·문화기술과·문화산업기반과·문화수출통상과·미디어정책과·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출판인쇄독서진흥과·대중문화산업과·저작권정책과·저작권산업과·저작권보호과·국제문화정책과·한류지원협력과 및 국제문화사업과를 두되, 문화산업정책과장·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게임콘텐츠산업과장·저작권산업과장·저작권보호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산업기반과장·미디어정책과장·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저작권정책과장·국제문화정책과</u>	⑦ -----<u>콘텐츠산업정책과·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게임콘텐츠산업과·출판인쇄독서진흥과·대중문화산업과·문화산업정책과·미디어정책과·문화기술과·문화수출통상과</u>----- -----<u>콘텐츠산업정책과장</u>----- -----<u>문화산업정책과장</u>-----

장·국제문화사업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문화기술과장 및 문화수출통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류지원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 ----- ----- -----.
⑧ <u>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u> <u>2.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조사·연구</u> <u>3. 문화산업진흥 재원 조성 및 운용</u> <u>4. 문화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u> <u>5. 문화산업과 관련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u> <u>6.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업무</u> <u>7.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u> <u>8.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발굴</u> <u>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⑧ <u>콘텐츠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광고·방송영상·영화·애니메이션·음악·비디오물·게임·출판·인쇄·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만화 및 디지털 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u> <u>2. 문화콘텐츠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u> <u>3.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u> <u>4.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u> <u>5.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u> <u>6. 문화콘텐츠산업의 세계 지원 등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u>

7. 문화콘텐츠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10.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11. 공공정보를 활용한 문화콘
텐츠 발굴
12.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와 사업화 촉
진,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3.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진
흥과 육성, 사업화 촉진, 생태
계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14.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송미
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
15. 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16. 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
조의 개선 및 지원
17.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
사·연구

⑨ 문화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
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
·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 운영
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
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
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 콘텐츠의 융·복합 콘

18. 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9. 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0. 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
과 법·제도의 정비

21.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
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22.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23.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2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비디오물·방송영상·
애니메이션 산업(이하 이 항
에서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이
라 한다) 진흥에 관한 종합계
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작·제작·배급·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3.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유통

텐츠 육성 관련 사항

5.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구조 개선·정보화·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영상방송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5.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8. 영상방송콘텐츠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9.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입체·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2. 영화·비디오물 관련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3.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14. 비디오물·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

⑩ 문화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2. 지역 콘텐츠산업 관련 연구 개발 사업 지원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4. 금융제도, 세제개선 등을 통한 문화산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문화 콘텐츠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 관련 사항
6.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7.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보호와 사업화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상품 및 문화콘텐츠의 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성에 관한 사항

15. 영화진흥위원회 · 영상물등급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6.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⑩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 ·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5.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게임산업의 남북교류 ·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
9.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9.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진
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진흥
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

11.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2.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창
작·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13.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분야
의 제작·배급·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 지원

14.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유
통구조 개선·정보화·투자활
성화에 관한 사항

15.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16. 캐릭터 및 이야기 산업의 남
북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
류에 관한 사항

⑪ 문화수출통상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
의 수립 및 총괄·조정에 관

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
와 유통·이용제공 관련 영
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
한 사항

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
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
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
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
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모바일·스마트 문
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
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⑪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에 관
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 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3.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 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
4.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산업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대내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국제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
7.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현지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해외에서의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3. 출판·인쇄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남북 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출판·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지원
11. 출판업·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육성·지원

10.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류에 관한 사항

⑫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기간행물 · 광고 · 방송영상 · 영화 · 애니메이션 · 음악 · 비디오물 · 게임 · 출판 · 인쇄 ·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 만화 및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4.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독서관련 법인 ·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6.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 연구

17.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⑫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음악 · 만화 · 대중문화예술 · 패션 · 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이 항에서 “대중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3. 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산업의 창작 ·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5. 대중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4.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뉴미디어 · 지역언론 · 정기간행물발행업 · 뉴스통신사업 진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미디어와 관련된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8. 문화콘텐츠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문화콘텐츠미디어산업 관련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육성

11.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 정기간행물사업 · 지역언론 · 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 정기간행물사업 ·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 신고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

6. 대중문화산업 관련 콘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7. 대중문화산업의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노래연습장업,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 · 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9.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고에 관한 사항

10. 대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대중문화산업 관련 응용 문화산업 발굴 및 지원

- 13. 외국신문 ·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사 지사 · 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 14.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 15.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뉴스통신진흥회 · 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
- 16.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외하며, 이하 이항에서 같다)
- 17. 광고산업 분야의 제작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육성
- 18. 광고산업과 관련된 유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 19.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 20. 광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21. 광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22. 광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 · 제도의 정비

23. 광고 관련 공익사업의 지원
과 건전한 광고문화 활동의
육성 · 지원

24. 새로운 광고기법의 개발 및
지원

25. 광고 표준화의 개발 및 지원

⑬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화 · 비디오물 · 방송영상 ·
애니메이션 산업(이하 이 항에
서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이라
한다)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작 · 제작 · 배급 · 상영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 육성

3.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유통구
조 개선 · 정보화 · 투자활성화
에 관한 사항

4. 영상방송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정책개발

5.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영상방송콘텐츠산업 분야의
남북교류 · 해외진출 및 국제교
류에 관한 사항

⑬ 문화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문화미디어산업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문화미디어산업진흥을 위한
조사 · 연구

3. 문화미디어산업진흥 재원 조
성 및 운용

4. 문화미디어산업진흥 기반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5. 문화미디어산업과 관련된 관
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업무 총괄

6. 콘텐츠 유통 합리화, 이용자
보호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
항

7.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8.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의 지정·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7. 영상방송콘텐츠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8. 영상방송콘텐츠산업 관련 콘
텐츠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
9. 뉴미디어 영상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입체·실감형 영상 등 융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독립제작사의 육성 및 지원
12. 영화·비디오물 관련업의 등
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13.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에 관
한 사항
14. 비디오물·온라인디지털영화
등 부가시장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5. 영화진흥위원회·영상물등급
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업무
16.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 ⑭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

-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0. 금융제도 등을 통한 문화산
업 분야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문화 콘텐츠 선순환 기업육
성 생태계 구축 관련 사항
12. 문화콘텐츠 아이디어의 상
용화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 ⑭ 미디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뉴미디어·지역언론·정기간
행물발행업·뉴스통신사업 진
흥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u>사 · 연구</u> <u>3. 게임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u>4. 게임산업 분야의 창작 ·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u> <u>5. 게임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사항</u> <u>6. 게임물 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u> <u>7. 게임산업의 남북교류 ·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u> <u>8.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및 게임제공업에 관한 사항</u> <u>9.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u> <u>10. 게임물의 공정한 등급분류와 유통 · 이용제공 관련 영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u> <u>11.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게임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u> <u>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지원 육성 및 그와 관련된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u> <u>13. 게임 이용 교육 및 게임 과몰입 예방 등 역기능 대처에</u>	<u>2. 문화미디어의 공익성 증진에 관한 사항</u> <u>3. 문화미디어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u> <u>4.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 정기간행물사업 · 지역언론 · 뉴스통신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5. 신문사업 · 인터넷신문사업 · 정기간행물사업 · 뉴스통신사업의 등록 · 신고에 관한 사항</u> <u>6. 외국신문 · 정기간행물 · 뉴스통신사 지사 · 지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u> <u>7. 디지털 뉴스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u> <u>8.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뉴스통신진흥회 · 언론중재위원회 및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관련된 업무</u>
---	--

관한 사항

14. 게임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

화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모바일·스마트 문

화콘텐츠산업 및 에듀테인먼트

트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⑮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에 관
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제작
활동 및 관련 단체의 지원·
육성

3. 출판·인쇄산업과 관련된 유
통구조의 개선 및 지원

4. 출판물 국제유통시스템 구축
및 출판유통 포럼에 관한 사항

5. 출판·인쇄산업의 진흥을 위
한 조사·연구

6. 출판물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출판·인쇄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출판·인쇄산업 분야의 남북
교류·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⑮ 문화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기술
의 연구개발(R&D) 업무 총괄
· 조정 및 평가관리체계 구축
· 운영

2. 문화기술 연구개발 및 콘텐츠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문화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
진 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 콘텐츠의 융·복합 콘텐
츠 육성 관련 사항

5. 문화기술 관련 대학원의 설립
· 지원 및 특성화 대학의 육성

에 관한 사항

9. 출판·인쇄산업의 지원 기반

확충과 법·제도의 정비

10. 출판산업·전자출판산업 및

인쇄산업의 육성·지원

11. 출판업·인쇄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양서출판 장려 및 우수 출판

물의 번역에 관한 사항

1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및 독서

문화진흥 활동의 육성·지원

14. 독서문화진흥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독서관련 법인·비영리단체

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6. 독서진흥 연차보고 및 국민

독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연구

17. 독서의 달 및 독서문화상에

관한 사항

18.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된 업무

⑩ 대중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음악·만화·대중문화예술·

⑩ 문화수출통상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문화체육관광 관련 통상정책

<u>패션·엔터테인먼트 산업(이하 이 항에서 “대중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관한 중</u> <u>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u> 2. <u>대중문화산업 진흥을 위한</u> <u>조사·연구 및 정책개발</u> 3. <u>대중문화산업 분야의 전문</u> <u>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u> 4. <u>대중문화산업의 창작·제작</u> <u>활동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u> 5. <u>대중문화산업의 유통구조 개</u> <u>선, 정보화 및 투자활성화에</u> <u>관한 사항</u> 6. <u>대중문화산업 관련 콘텐츠</u> <u>판매 촉진 활동의 지원</u> 7. <u>대중문화산업의 남북교류·</u> <u>해외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u> <u>사항</u> 8. <u>노래연습장업, 음반·음악영</u> <u>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u> <u>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u> <u>스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u> <u>관한 사항</u> 9. <u>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u> <u>처우 개선 및 사회적 위상 제</u> <u>고에 관한 사항</u>	<u>의 수립 및 총괄·조정</u>에 관한 <u>사항</u> 2. <u>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u> <u>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u> <u>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u> 3. <u>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u> <u>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u> <u>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u> <u>자통상에 있어서 문화체육관</u> <u>광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u> 4. <u>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협</u> <u>정 등의 체결에 따른 문화체육</u> <u>관광산업 분야의 후속대책 수</u> <u>립에 관한 사항</u> 5. <u>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대내</u> <u>외 통상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u> <u>한 정보, 자료의 수집 등에 관</u> <u>한 사항</u> 6. <u>문화체육관광산업 관련 국제</u> <u>통상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u> <u>의 통상 협력에 관한 사항</u> 7. <u>문화콘텐츠 해외진출 현지 사</u> <u>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u> 8. <u>문화콘텐츠 해외진출 글로벌</u> <u>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9. <u>해외에서의 문화콘텐츠 지식</u>
---	---

10. 대중문화산업 관련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1. 대중문화산업 관련 응용 문
화산업 발굴 및 지원

⑰ ~ ②② (생략)

제14조(관광정책실)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
라 관광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
좌기관은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
광정책관으로 하며, 관광정책관
및 국제관광정책관은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
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관광정책관은 「문화체육관
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18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
지,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
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
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관광정책관은 「문화체
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1호부터 제19호

재산권 확보에 관한 사항

10. 문화산업과 관련된 남북교
류에 관한 사항

⑰ ~ ②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관광정책실)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17조제1항-----

-----.

③ ----- 「문화체육관광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
조제3항제1호-----

-----.

④ ----- 「문화체육
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1호-----

까지, 제24호 및 제25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5조(체육국)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체육협력관으로 하며, 체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체육협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0호(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 -----. 제15조(체육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 ----- ----- ----- ----- ----- -----. ③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0호----- ----- ----- ----- -----.
--	---